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
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
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가. 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「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」이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(2024. 8. 26.)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나. 2025년 2월 27일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이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(2025. 3. 7.).
- 다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11. 26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라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12.

1.)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
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
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조(「산림보호법」의 개정)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10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3조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

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조(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장 · 군수·구청장은 목재생산업 자(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 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 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2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(생략)	1.·2.(현행과 같음)
3.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 치지 못하게 된 경우 <단서 <u>신설</u> >	3. ----- -----. <u>다만,</u> <u>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</u> <u>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</u> <u>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</u> <u>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</u> <u>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u> <u>한다.</u>
4. ~ 8.(생략)	4. ~ 8.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10(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5호,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21조의10(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<단서 신설>	2. ----- ----- --. 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3. ~ 6. (생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	제25조(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<단서 신설>	1. ----- ----- 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장 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 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.	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<단서 <u>신설</u> >	5. ----- ----- . <u>다만,</u> <u>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</u> <u>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</u> <u>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</u> <u>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</u> <u>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u> <u>한다.</u>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